

#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이해경 의원 외 13명
- 나. 의안번호 : 제1590호
- 다. 제출일자 : 2016. 12. 29
- 라. 회부일자 : 2017. 1. 2

### 2. 제안사유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에서 교통약자를 “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보호 및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안내방송의 근거를 마련하고,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대상을 ‘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’에서 ‘교통약자’로 확대함.(안 제7조제2항제3호)
- 나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구 조항 신설.(안 제18조)
- 다.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 보호 및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신설.(안 제19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17. 1. 5 ~ 2017. 1. 12
  - 제출의견 : 없음
- 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 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) : 수정 동의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 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하고,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교통약자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 의견

#### ■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 확대(안 제7조제2항제3호 관련)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(이하 “증진계획”이라 한다) 내용 중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대상을 현행 “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”에서 “교통약자”로 확대하는 것으로

동 조례의 상위법인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』에서 “교통약자”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,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<sup>1)</sup>하고 있다는 점에서

특정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동편의정보 제공 대상을 전체 교통약자로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, 관련 법령 및 동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#### ■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8조 관련)

- 안 제18조(위원회 운영)는 증진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’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

증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업까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바, 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임

#### ■ 교통약자 안내방송 규정 신설 등(안 제19조 관련)

- 안 제19조(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)는 대중교통운영 기관장 등의 교통약자를

---

1)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위한 안내방송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으로

이는 법 제5조2)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노력하도록 한 사항 및 현재 버스·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내방송이 시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

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해 질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바, 이는 조례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--

2) 제5조(교통사업자 등의 의무)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  
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·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·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